

충청북도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00. 5. 25
기획행정위원회

1. 실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제출일자 : 2000년 5월 12일

회부일자 : 2000년 5월 12일

다. 상정일자 : 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00.5.19)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가. 제안이유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상이등급 7급인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도 도세를 면제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제정에 따라 신용보증조합의 설립근거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것임.

나. 주요골자

○ 국가 유공자의 감면대상 범위 확대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6급인 자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하는 1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던 것을

⇒ 신설된 상이등급 7급인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도 도세를 면제하도록 함 (안 제2조 제3항)

○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설립근거 및 명칭변경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어
⇒ 지역신용보증재단법('99.9.7제정공포, 2000.3.1)에 의거 충청북도 신용보증조합을 충북신용보증재단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안제26조)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종 만)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을 1급내지 6급인 대상자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와 면허세를 면제하던 것을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상이등급 7급인 국가유공자에게도 동일하게 도세를 면제하려는 것이고,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에따라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이 충북신용보증재단으로 명칭변경을 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확대에 따라 감면되는 도세 세액의 현황과 감면에 따른 재원확보 대책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1급 내지 6급” 을 “1급 내지 7급” 으로 한다.

제26조 제목 “신용보증조합” 을 “신용보증재단” 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 를 “지역 신용보증재단법” 으로,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 을 “충북 신용보증재단” 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 을 “충북신용보증재단” 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인)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면허세를 추징 한다.	
1.~4. (생략) ④(생략)	1.~4. (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제26조(<u>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u>) ① <u>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 조례</u> 에 의하여 설립된 <u>충청북도 신용보증조합</u> 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 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6조(<u>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u>) ① <u>지역신용보증재단법</u> --- --- <u>충북신용보증재단</u>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u>충청북도 신용보증조합</u> 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 <u>충북 신용보증재단</u> ---

참 고 자 료

- 지방세법 (부분발췌)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분발췌)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부분발췌)
-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 및 운영조례 (부분발췌)
- 행정자치부(안) 사본

관련법규 (부분발췌)

○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①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99. 8. 31 신설, 2000. 1. 1 시행)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99. 9. 7 제정 공포)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별로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법인격)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명칭) 재단은 그 명칭 중에 “신용보증재단”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설립) ① 재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도별로 설립된 신용보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당해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 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사단법인은 총회의 결의로써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립되는 재단이 승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 ('99. 2. 26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도내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중소기업이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육성과 균형있는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법인격) ① 조합은 재단법인으로 한다.